# 「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5. 2. 16. 개정 판 (시행 2015. 3. 1.) → 2008. 3. 1. 개정 판 (시행 2008. 3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192/compare?from=483&to=481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10:19:5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3조(지원내용)**<br>① 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,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<br>1.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<br>2.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<br>3. 단순참가 실비<br>4. 학술대회 참가실비<br>② 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,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. 단,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(원)의 대학(원)생, 등록된 박사후연구생,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.<br>1.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.<br>2. 국외발표의 경우<br>(1)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.<br>(2) 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,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. 단, 동남아 국가는 1회에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-02-16〉<br>3.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.<br>4.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. | **제3조(지원내용)**<br>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,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<br>1.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<br>2.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<br>3. 단순참가 실비<br>4. 학술대회 참가실비<br>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,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. 단,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(원)의 대학(원)생, 등록된 박사후연구생,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.<br>1.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.<br>2. 국외발표의 경우<br>(1)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.<br>(2) 1년 100만원(연 2회 제한)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,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.<br>3.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.<br>4.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. |
| **제4조(의무사항)**<br>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.<br>② 강의와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. | **제4조(의무사항)**<br>①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.<br>②강의와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. |
| **제5조(신청시기)**<br>학술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교무처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은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연구처로 제출한다. | **제5조(신청시기)**<br>학술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교무처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은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연구진흥실로 제출한다. |
| **제7조(결과보고)**<br>① 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.<br>② 논문발표의 경우,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. | **제7조(결과보고)**<br>①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.<br>②논문발표의 경우,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. |